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의 장

제49호 2022. 7. 6(수)

## 조 례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조례33건)----- 1
- 남원시 조례 제178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13
- 남원시 조례 제1784호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남원시 조례 제1785호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18
- 남원시 조례 제1786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26
- 남원시 조례 제1787호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31
- 남원시 조례 제1788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46
- 남원시 조례 제1789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51
- 남원시 조례 제1790호 작성하기 쉬운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60
- 남원시 조례 제1791호 남원시 국어진흥 조례-----65
- 남원시 조례 제1792호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69
- 남원시 조례 제1793호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75
- 남원시 조례 제1794호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82
- 남원시 조례 제1795호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88
- 남원시 조례 제1796호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90
- 남원시 조례 제1797호 남원시 합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93
- 남원시 조례 제1798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97
- 남원시 조례 제1799호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104
- 남원시 조례 제1800호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15
- 남원시 조례 제1801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27
- 남원시 조례 제1802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133
- 남원시 조례 제1803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135
- 남원시 조례 제1804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139
- 남원시 조례 제1805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 남원시 조례 제1806호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51

- 남원시 조례 제1807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52
- 남원시 조례 제1808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66
- 남원시 조례 제1809호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168
- 남원시 조례 제1810호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169
- 남원시 조례 제1811호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74
- 남원시 조례 제1812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82
- 남원시 조례 제1813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84
- 남원시 조례 제1814호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188
- 남원시 조례 제1815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191

<b>규 칙</b>
------------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규칙3건)----- 198
- 남원시 규칙 제710호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99
- 남원시 규칙 제711호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
- 남원시 규칙 제712호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4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

-조례33건-

□ 조례 : 33건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178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 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 (안 제2조, [별표1])	의회 사무국
1784	남원시의회 시민의 견 청취를 위한 토 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조제2호)	의회 사무국
1785	보훈대상자 공공시 설 이용요금 감면규 정 정비를 위한 남 원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해 서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규정에 따라, 조례에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 조례 별표에 반 영함. 가. (안 제1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별표3 나. (안 제2조)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별표4 다. (안 제3조)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 료 등 징수 조례」 제8조, 별표4	감사실
1786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괄개정조례	가. ‘문화체육장’을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효열 봉사장’을 ‘효행장’과 ‘봉사장’으로 부문 분리 하여 규정 (안 제2조, 제3조)	행정 지원과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나.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조항을 신설 (안 제7조의2) 다. 그 밖에 어문규정에 맞는 정비 (안 제6조, 안 제7조)	
1787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 규정 (안 제1조~안 제5조) 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안 제6조~제17조) 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8조~22조) 라. 시장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보칙 등 규정 (안 제 23조 ~제27조)	행정 지원과
1788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총정원: 1,165명 → 1,167명(증 2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135명 → 1,137명(증 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3) 1) 총 계: 1,165명 → 1,167명(증 2명) 2) 일반직 계: 1,115명 → 1,117명(증 2명) - 6급 이하 계: 1,052명 → 1,054명(증 2명)	행정 지원과
1789	민원인 구비서류 감 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 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조 ~ 제3조) - (안 제1조)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	민원과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p>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제2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제2조</li> <li>- (안 제3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7조제3항</li> </ul> <p><b>나. 별지 서식의 개정 : 민원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제1조)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별지 서식</li> <li>- (안 제2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li> <li>- (안 제3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li> </ul>	
1790	작성하기 쉬운 민원 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 정조례	<p><b>가. 별지서식 개선 정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정함 (안 제1조)</li> <li>- 「남원시 건축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정함(안 제2조)</li> </ul> <p><b>나. 개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는 서식디자인 재설계</li> <li>- ‘큰 글자 서식’으로 개편</li> <li>- 민원서식 작성 목적에 맞는 필수 정보 기입란 추가</li> </ul>	민원과
1791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	<p><b>가. 목적, 정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b></p> <p><b>나.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국어 책임관의 지정 등 (안 제5조~제6조)</b></p> <p><b>다. 지역어의 보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b></p>	문화 예술과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라. 교육, 한글날 등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9조) 마. 예산 지원, 포상 규정 (안 제10조~제11조)	
1792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 례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문화원의 시설, 시설지원, 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 사업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라. 사업의 위탁·대행, 준용, 시행규칙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문화 예술과
1793	남원시 지역문화예 술진흥 조례 전부개 정조례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 (안 제4조~제5조) 다. 위원회에 관련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13조) 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제15조) 마. 사무의 위탁, 준용, 포상 규정 등 (안 제16조~제19조)	문화 예술과
1794	남원시 지역문화진 흥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문화 예술과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2조)	
1795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제1항) -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나.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공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2항)	문화 예술과
1796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1항) -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나.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공고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어문규정 정비 (안 제10조, 제15조)	문화 예술과
1797	남원시 합파우 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	가. 휴관일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5조) -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1월 1일을 휴관일에 추가 나. 반환사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9조) 다. 알기쉬운 법령 기준 및 어문규정 정비 (안 제5조, 제9조)	문화 예술과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1798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독서문화 여건 조성(매년 1회 독서 관련 행사)과 관련한 규정(안 제4조) 나. 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 등(안 제5조) 다. 표창, 감사 위촉 등 규정 (안제7조~제8조)	문화 예술과
1799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가.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규정(안 제1~4조) 나. 도서관 휴관일 및 이용시간, 회원 이용 제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8조) 다. 도서관 자료의 이관·폐기, 자료의 기증에 대한 규정(안 제9조~제11조) 라. 변상 책임, 문화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 규정(안 제12조~제14조) 마. 시설의 사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안 제15조~제16조) 바.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 관련한 규정 (안 제17조~제21조)	문화 예술과
1800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가.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규정 (안 제1~4조) 나. 회원, 휴관일 및 이용시간, 이용 제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자료의 변상·기증·이관·폐기·대출에 대한 규정(안 제8조~제12조) 라. 문화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 규정 (안 제13조~제14조) 마. 시설의 사용, 장난감 대여실 이용 규정 (안 제15조~제16조) 바. 도서관 운영 위원회 및 개인정보 이용 규정 (안 제17조~제18조)	문화 예술과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180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 규정(안 제13조제4항) -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 등 변경사항 반영(별표 1, 2, 3)	교육 체육과
1802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분 세율에서 삭제하고 사업소분 세율에 편입함(안 제6조, 제7조)	재정과
1803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세 관련하여 자동차세 등에 대한 다른 시·군·구와의 위·수탁 사무규정 구체화 함. (안 제 3조) -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재정과
1804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등 시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 “2022년 6월 30일”까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나.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 삭제(안 제4조)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 연장 및 상 위 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5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 12월 31일”까지 라. 농공단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7조)	재정과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한 삭제(안 제8조) 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의 개정으로 기존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안 제3조) 아. 자동이체 등 송달 및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300원”에서“500원”으로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600원”에서“1000원”으로 개정(안 같은항 제2호) 자. 그 밖의 어문규정에 의한 정비(안 제6조, 제16조)	
1805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나.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1항)	재정과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1806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소모품’의 정의 개정 (별표1) - 취득단가기준 (10만원 이하 → 50만원 미만)	재정과
1807	남원시 공유재산 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	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삭제 (안 제5조제1항2호) 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조항 신 설 (안 제7조의2) 다.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17조, 제25조, 제32조, 제62조, 제64조) 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연 4회 → 연 6회 (안 제35조제2항1호) 마. 그 밖의 어문규정 정비(안 제19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40조, 제45조, 제47 조, 제52조, 제63조, 제66조)	재정과
1808	남원시 중소기업육 성기금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	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1조, 제16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제3항) 다. 자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6조) 라. 융자신청 서류와 이차보전 대상의 명확화(안 제8조, 제11조)	기업 지원과
1809	남원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원예 산업과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1810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축산인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다. 축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안 제5조~제7조) 라. 축산업 발전 및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0조~제16조)	축산과
1811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구성 사항 규정 (안 제 7조) 나. 인용 조례 제명 변경 사항 반영 (안 제14조 제3항) 다. 도시재생업무 위탁 대상 명확히 규정 (안 제 7조제6항) 라. 공동이용시설 관리 위탁 규정 (안 제14조의 2) 마. 그 밖의 어문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2조, 제14조제3항제4호, 제15조)	도시과
1812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의무자의 범위 규정 (안 제16조제3항)	안전 재난과
1813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명칭 변경 (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 (안 제4조제2호, 제5조제1호)	안전 재난과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1814	남원시 자동차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 부개정조례	가. 상위법 근거조항 및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나.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개인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사항 규정 (안 제3조)	교통과
1815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경감 대상 추가 (안 제3조제4항제2호, 별표 5) 나.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이중부과 방지 조항 신설 (안 제3조제4항제3호) 다. 임산부 운전차량에 대한 경감 조항 신설 (안 제3조제4항제8호) 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제4항제3호다목, 별표 3)	교통과

공포 번호	규칙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710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의회 사무국
711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 청가서 제출 관련 단서를 신설함(안 제7조 제1항)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를 보완함(안 제11조)	의회 사무국
712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가. ‘주민세(재산분)’를 ‘주민세(사업소분)’으로 용어 변경(안 제6조)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안 제7조)	재정과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83 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이 변경된 남원시의회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 1]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내용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	현 행	개 정
1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2	남원시의회 의 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제4조 제2항	영 제36조 관련	영 제33조 관련
3	남원시의회 회 기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	현 행	개 정
4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 3조에
		제2조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 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 호까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하“영”이라 한다) 제43조제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3조 제1항	영 제44조의 규정에	영 제42조의 규정에
		제3조 제3항	조사계획서에는 영 제45 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조사계획서에는 영 제43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
		제5조 제1항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제12조	법 제42조제2항에	법 제51조제2항에
		제16조	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의	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46 조제6항의
		제18조	영 제44조제3항의	영 제47조제3항의
		제19조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 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 거나 영 제47조의	영 제49조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 0조의
		제20조제1항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제4항에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84 호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를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85 호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립김병중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6호, 제7호, 제9호를 삭제한다.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3에 따른 면제 대상자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 제6호, 제7호를 삭제한다.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u>국가유공자와 그 유족</u></p> <p>6.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적용을 받는 <u>독립유공자와 그 유족</u></p> <p>7. 「<u>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u>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u></p> <p>8.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u>참전유공자</u></p> <p>9. ~ 13.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3에 따른 면제 대상자</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9. ~ 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2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 ~ 3. (생략)</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p> <p>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p> <p>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p> <p>7.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p> <p>8. ~ 15.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입장료 면제)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8. ~ 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제3조(「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입장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 ~ 3. (생략)</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p> <p>5. ~ 11. (생략)</p>	<p>제8조(입장료 감면)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p> <p>5. ~ 11. (현행과 같음)</p>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3] <신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람료 면제대상자**(제8조제1항제5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표 4] <신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입장료 면제대상자**(제8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별표 4] <신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면제대상자**(제8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86 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시민의장”을 “시민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문화장
- 2. 효행장
- 5. 봉사장
- 6. 체육장

제3조 제목외의 부분 “시민의장”을 “시민의 장”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문화장: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 2. 효행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 3. 산업노동장: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

4. 애향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5. 봉사장: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사람

6. 체육장: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제6조 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조 중 “수상적격자가”를 “수상자격에 적합한 사람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수상부문과 관련된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
4.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민의장) <u>남원시민의 장</u> (이하 “<u>시민의 장</u>”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p> <p>1. <u>문화체육장</u></p> <p>2. <u>효열봉사장</u></p> <p>3.·4.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3조(수여대상) <u>시민의장</u>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u>문화체육장은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였거나 시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고 남원시 체육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u></p> <p>2. <u>효열봉사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었거나,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에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람</u></p> <p>3. <u>산업노동장은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u></p>	<p>제2조(시민의 장) ----- ----- -----.</p> <p>1. <u>문화장</u></p> <p>2. <u>효행장</u></p> <p>3.·4. (현행과 같음)</p> <p>5. <u>봉사장</u></p> <p>6. <u>체육장</u></p> <p>제3조(수여대상) <u>시민의 장</u>----- ----- -----.</p> <p>1. <u>문화장: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u></p> <p>2. <u>효행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u></p> <p>3. <u>산업노동장: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u></p>

현 행	개 정 안
<p><u>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u> <u>말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u> <u>을 발휘하여 노동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사람</u></p> <p>4. <u>애향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6조(추천) 시민의 장 후보자는 시 출신자 및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명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lt;후단신설 200</p>	<p><u>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u> <u>말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u> <u>을 발휘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u></p> <p>4. <u>애향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u></p> <p>5. <u>봉사장: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사람</u></p> <p>6. <u>체육장: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u></p> <p>제6조(추천) ----- ----- ----- ----- ----- ----- 한정하 ----- -----</p>

현 행	개 정 안
<p>5.2.14, 개정 1997.7.28, 1998.11.9, 2005.2.14., 2020.3.27.&gt;</p> <p>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후보자 중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u>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p> <p>-----</p> <p>제7조(수상자 결정) -----</p> <p>-----</p> <p>-----</p> <p>-----</p> <p><u>수상자격에 적합한 사람이</u> -----.</p> <p><u>제7조의2(수상자의 예우) 시장은</u></p> <p><u>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u></li> <li>2. <u>수상부문과 관련된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u></li> <li>3. <u>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u></li> <li>4. <u>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u></li> <li>5. <u>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u></li> </ol>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87 호

###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9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각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시와 읍·면·동 행정기능 중 자치사랑방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1항의2에 따른 추천 또는 제10조1항의1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1년 이상 등재 된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가능한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의 1년 이상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만, 고문으로 참여 가능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2.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제9조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6.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 2. 수탁 권한: 자치사랑방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추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읍·면·동 내에 위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 1. 읍·면·동장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2. 관내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명 이내

③ 추천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0조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 추천위원회에서 공개 추천하여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

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하

3. 다만, 제1호에 의한 공개모집 선정 미달 시 제2호에 의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명 이상 경쟁 시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등을 진행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정족수,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기타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민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때
3.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의 분과회의, 분과장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또는 활동 참여
3.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연간 주민자치 관련 교육, 연수 등 3시간 이상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시 선출될 수 없다.

② 부회장, 감사, 간사, 위원 of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of 임기는 전임 위원 of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전 임기 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한 위원만 해당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of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of 위원이 다음 각 호 of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 of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 of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상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 of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of 의결을 거쳐 그 위원 of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 of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임 또는 제22조 각 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은 같은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다.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 읍·면·동 주민참여예산기구,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행정안전부에서 제도 도입 시행 이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농촌형 1개소 및 도시형 1개소에 대해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읍·면·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전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88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65명”을 “1,16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35명”을 “1,13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총정원: <u>1,165명</u></p> <p>2. 집행기관의 정원: <u>1,135명</u></p> <p>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0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p> <p>-----.</p> <p>1. -----: <u>1,167명</u></p> <p>2. -----: <u>1,137명</u></p> <p>3. (현행과 동일)</p>

[별표 3]

##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67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7	-				
4급	6	4	1	1		
5급	57	26	2	3	3	23
6급 이하 계	1,054	-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발생분
- 관련조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인건비 소요분
  - 2022년 인건비 30백만원 × 2명
-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세출	인건비	60	62	62	63	64	311

※ 기준금액: 8급 10호봉 / 연도별 1.3% 상승

###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시비 311백만원(기준인건비 내)

###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행정안전부 연도별 기준인건비 책정·통보
- 작성자: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60,751	61,540	62,340	63,151	63,972	311,754
지방세		60,751	61,540	62,340	63,151	63,972	311,754
의존재원		-	-	-	-	-	
세 출		60,751	61,540	62,340	63,151	63,972	311,754
인건비		60,751	61,540	62,340	63,151	63,972	311,754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751	61,540	62,340	63,151	63,972	311,754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89 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 장애인증명서
- 3. 한부모가족증명서
- 4. 주민등록등본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초본
- 2. 입금계좌 확인정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원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 대비표

## 제1조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li> <li>2. 장애인증명서</li> <li>3. 한부모가족증명서</li> <li>4. 주민등록등본</li> </ol>

### 제2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lt;신 설&gt;</p>	<p>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주민등록 초본</p> <p style="margin-left: 20px;">2. <u>입금계좌 확인정보</u></p>

### 제3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p>	<p>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u></p>

현 행	개 정 안
<p>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li> <li>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li> <li>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li> <li>4. 그 밖에 신청인 구비서류</li> </ol>	<p><u>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주민등록 등·초본</u></li> <li>2. <u>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u></li> <li>3. <u>소득금액증명원</u></li> <li>4. <u>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세)</u></li> <li>5. <u>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 (통장사본)</u></li> </ol>



■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성 별	남 · 여
전 화 번 호		직 업	
남 원 시 거 주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면 허 취 득 기 중	
교 육 비		신 청 액 (교육비 50%)	
금 용 기 관	계 작 번 호	예 금 주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지원부 1부	2. 교육이수증 1부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Table with columns for applicant info, marital status, income, housing status, and loan details.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Table with 2 columns: 신청인 제출서류 (Application Documents) and 담당자 확인사항 (Responsible Party Confirmation Items).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Form for official stamp and signature, including fields for name, position, and official seal.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90 호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남원시 건축 조례」의 개정)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별지 1호서식]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 ] 남 [ ] 여
	주소		
	사회활동 정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담당자 확인사항	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	
		질환 종류 및 정도	
	경제상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지원상황	[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작성방법	

1. 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5%;">대상자</td> <td style="width:15%;">성명</td> <td style="width:30%;">생년월일</td> <td style="width:50%;"></td> </tr> <tr> <td></td> <td>주소</td> <td>전라북도 시 읍·면·동</td> <td>대로로,길</td> </tr> <tr> <td></td> <td>연락처</td> <td>자택</td> <td>기타</td> </tr> <tr> <td></td> <td>신청품목</td> <td colspan="2">성인용 보행기</td> </tr> <tr> <td></td> <td>사회활동정도</td> <td colspan="2">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td> </tr> <tr> <td>①건강상태</td> <td colspan="3">*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td> </tr> <tr> <td>②경제상태</td> <td colspan="3">*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td> </tr> <tr> <td>③지원상황</td> <td colspan="3">*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td> </tr> <tr> <td>첨부서류</td> <td colspan="3">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td> </tr> </table> <p>①, ②, ③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p> <p>주소 : </p> <p>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p> <p>남원시장 귀하</p>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라북도 시 읍·면·동	대로로,길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p>■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별지 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b></p> <p>※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5%;">접수번호</td> <td style="width:60%;"></td> <td style="width:10%;">접수일자</td> <td style="width:25%;"></td> </tr> <tr> <td rowspan="4">대상자</td> <td>성명</td> <td colspan="2">생년월일</td> </tr> <tr> <td>전화번호</td> <td colspan="2">성별 [ ] 남 [ ] 여</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td> </tr> <tr> <td>사회활동 정도</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3">신청인</td> <td>성명</td> <td colspan="2">생년월일</td> </tr> <tr> <td>전화번호</td> <td colspan="2">대상자와의 관계</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4">담당자 확인사항</td> <td rowspan="2">건강상태</td> <td>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td> <td></td> </tr> <tr> <td>질환 종류 및 정도</td> <td></td> </tr> <tr> <td>경제상태</td> <td>[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td> <td></td> </tr> <tr> <td>지원상황</td> <td>[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td> <td></td> </tr> </table> <p>「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5%;">첨부서류</td> <td>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작성일</td> </tr> </table> <p>1. 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0cm×297mm(일반용지 60g/㎡(자출용))] </p>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 ] 남 [ ] 여		주소			사회활동 정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담당자 확인사항	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		질환 종류 및 정도		경제상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지원상황	[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첨부서류	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작성일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라북도 시 읍·면·동	대로로,길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 ] 남 [ ] 여																																																																														
	주소																																																																															
	사회활동 정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담당자 확인사항	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																																																																														
		질환 종류 및 정도																																																																														
	경제상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지원상황	[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첨부서류	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작성일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건축심의신청서</b> (제7조제2항 관련)                 </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10%;">연 번</td> <td colspan="5">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td> </tr> <tr> <td>건축위치</td> <td colspan="3"></td> <td>대지면적</td> <td></td> </tr> <tr> <td>용도지역지구</td> <td>용도지역</td> <td></td> <td>용도지구</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규 모</td> <td>건축면적</td> <td>㎡</td> <td>건폐율</td> <td>%</td> <td>연면적</td> </tr> <tr> <td>구 조</td> <td></td> <td>층 수</td> <td></td> <td>최고높이</td> </tr> <tr> <td>건축용도</td> <td></td> <td>건축종별</td> <td></td> <td></td> </tr> <tr> <td>설계변경인경우 변경 내용</td> <td colspan="5"></td> </tr> <tr> <td rowspan="2">건축주</td> <td>주 소</td> <td colspan="4"></td> </tr> <tr> <td>성 명</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2">설계자</td> <td>주 소</td> <td colspan="4"></td> </tr> <tr> <td>사무소명</td> <td></td> <td>성 명</td> <td colspan="2"></td> </tr> </table> <p>상기의 내용과 같이 「남원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인)</p> <p>남 원 시 장 귀하</p> <p>붙임 1. 간략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그 밖에 건축심의를 필요한 서류</p>	연 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건축위치				대지면적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규 모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구 조		층 수		최고높이	건축용도		건축종별			설계변경인경우 변경 내용						건축주	주 소					성 명					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p>■ 남원시 건축 조례 [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제7조 관련)</b></p> <p><small>※ 이쪽은 단(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항을 주여 √ 표시를 합니다.</small></p> <p>연번</p> <p>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p> <p>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p> <p>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속물 부착 사건통지 등의 문서 송달여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p> <p>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p> <p>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p> <p>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지구 / 구역</p>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대지면적</td> <td>㎡</td> <td>건축면적</td> <td>㎡</td> <td>연면적</td> <td>㎡</td> <td>건폐율</td> <td>%</td> <td>용적률</td> <td>%</td> </tr> <tr> <td>건물용도</td> <td></td> <td>구조</td> <td></td> <td>층수</td> <td></td> <td>최고높이</td> <td></td> <td></td> <td></td> </tr> <tr> <td>층수</td> <td>지하: 층</td> <td>지상: 층</td> <td>세대수/동수</td> <td></td> <td>세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주차장</td> <td>구분</td> <td>육내</td> <td>육외</td> <td>인근</td> <td>면제</td> <td colspan="4"></td> </tr> <tr> <td>자주식</td> <td>대</td> <td>대</td> <td>대</td> <td>대</td> <td colspan="4"></td> </tr> <tr> <td>기계식</td> <td>대</td> <td>대</td> <td>대</td> <td>대</td> <td colspan="4"></td> </tr> <tr> <td>건축기준 완화내용</td> <td>관계법령</td> <td colspan="8"></td> </tr> <tr> <td></td> <td>신청사유</td> <td colspan="8"></td> </tr> </table> <p>설계변경인 경우 변경내용</p> <p>「남원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p>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small>210mm×297mm [복합용지(2종) 70g/㎡]</small></p>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층수		최고높이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세대수/동수		세대					주차장	구분	육내	육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대	대	대					기계식	대	대	대	대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연 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건축위치				대지면적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규 모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구 조		층 수		최고높이																																																																																																																																								
	건축용도		건축종별																																																																																																																																										
	설계변경인경우 변경 내용																																																																																																																																												
건축주	주 소																																																																																																																																												
	성 명																																																																																																																																												
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층수		최고높이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세대수/동수		세대																																																																																																																																								
주차장	구분	육내	육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대	대	대																																																																																																																																								
	기계식	대	대	대	대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91 호

###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지역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

터,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남원시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항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국어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항
8. 그 밖의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어 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의 국어 발전 및 보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시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역어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홍보물 제작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문해 취약 계층 및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92 호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이란 남원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

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남원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시설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 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대행)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 재정수반요인
  - ① 남원문화원 지원·육성 의무
  - ② 남원문화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2. 관련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 2. 비용 추계결과

- 1. 비용추계의 전제
  - ① 운영인력 인건비 반영(직원3명, 학예사1~3명)
    - 학예사 인건비는 공모사업비(2022년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기준액 반영
    - ※ 공모지원액 : 34백만원(국비 22 / 시비12)
  - ② 문화원 공공제세, 일반 수용비 등 일반 운영비 반영
  - ③ 남원 문화원 육성을 위한 사업비 반영
- 2. 비용추계의 결과
  - 인건비 상승률(2%) 및 인력 확충(2026년까지 추가3명), 물가 상승률(1.5%) 등 고려
    - 공모사업확정(국가직접지원)으로 2023년까지 학예사 1명 인건비(국비, 시비) 지원 가능하나, 2024년부터 전액시비로 편성해야하며 2024~2025년 학예사 2명, 2026년 학예사 3명 필요 (※ 문화원의 학예기능 강화 필요에 따른 인건비 상향 불가피)
  - 학예기능 강화 시 전문적이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 필요
  - 연도별 비용 예상 추계표 (단위 : 연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b>합 계</b>	<b>236</b>	<b>22</b>	<b>22</b>	<b>192</b>	<b>248</b>	<b>22</b>	<b>22</b>	<b>204</b>	<b>297</b>	<b>0</b>	<b>22</b>	<b>275</b>	<b>313</b>	<b>0</b>	<b>22</b>	<b>291</b>	<b>369</b>	<b>0</b>	<b>22</b>	<b>347</b>
운영비	147	22		125	150	22		128	188			188	191			191	232			232
사업비	89		22	67	98		22	76	109		22	87	122		22	100	137		22	115

#### 3. 재원 조달 방안

- 1. 재원조달계획(주재원은 시비)
  - 운영 관련 : 시비보조금, 국가공모사업신청에 따른 직접지원
  - 사업비 관련 : 시비보조금, 도비보조 및 공모사업 신청

#### 4. 그 밖의 사항

- 1. 부대의견 : 없음
- 2. 협의사항 : 없음
- 3. 참여자 및 작성자 : 남원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별지 제2호서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b>세 입</b>	<b>44</b>	<b>44</b>	<b>22</b>	<b>22</b>	<b>22</b>	<b>154</b>	
국비	22	22				44	
도비	22	22	22	22	22	110	
<b>세 출</b>	<b>236</b>	<b>248</b>	<b>297</b>	<b>313</b>	<b>369</b>	<b>1,463</b>	
국비	22	22				44	
도비	22	22	22	22	22	110	
시비	192	204	275	291	347	1,309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2	22	22	22	22	110
	보조금	22	22	22	22	22	11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93 호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및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평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추천 의원 1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문화·예술 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문화예술담당 국장 및 과장(당연직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문화예술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

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발전을 위한 행사,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6.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보호·지원·육성
7. 문화격차해소 및 문화환경 개선
8. 지역, 단체, 기업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활동 지원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0.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남원지회의 지원·육성
11. 생활문화 활동의 지원·육성
12. 그 밖에 남원시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또는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94 호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은 원금과 이자 등 기금 조성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 전에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회계연도마다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분야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 의원

나.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진흥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범죄 관련 등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지역문화진흥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95 호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개관 및 휴관) 명창의 여정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p> <p>1. (생략)</p> <p>2. <u>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u></p> <p>3. (생략)</p> <p>4. <u>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lt;신설&gt;</u></p>	<p>제5조(개관 및 휴관)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② <u>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96 호

###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되는”을 각각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지하거나”를 “막거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개관 및 휴관) 성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p> <p>1. <u>월요일</u></p> <p>2. 3. (생략)</p> <p><u>&lt;신설&gt;</u></p>	<p>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 -----.</p> <p>1. <u>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u></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u>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u></p>
<p>제10조(안치) 시장은 국악분야의 공적이 <u>인정되는</u> 자를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국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u>인정되는</u> 자로서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p>	<p>제10조(안치) ----- ---- <u>있다고 인정되는</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있다고 인정되는</u> ----- ----- -----</p>

# 시 보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방안시설 및 묘역 존엄유지) ① (생략)</p> <p>② 관리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이를 <u>제지하거나</u> 방안시설 및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p>	<p>제15조(방안시설 및 묘역 존엄유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막거나</u> -----</p> <p>-----</p> <p>-----.</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97 호

###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관리·운영”을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날”을 “1월 1일, 설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하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를 “시 홈페이지 등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고하 지 아니할”을 “공고하지 않을”로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 한 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

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일”을 “전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일로 부터”를 “신청일로부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칙</u>	<u>&lt;삭 제&gt;</u>
<u>제2장 관리·운영</u>	<u>&lt;삭 제&gt;</u>
제5조(관리·운영) ① ~ ③ (생략)	제5조(관리·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리체험관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
1. <u>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날</u>	1. <u>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u>
2. <u>설날 및 추석날</u>	2. <u>1월 1일, 설날</u> ----- -----
3. <u>그밖에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여 사전에 고지한 날</u>	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 한 날</u>
⑤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u>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u>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u>공고하 지 아</u> 니할 수 있다.	⑤ ----- 10 일 ----- <u>시 홈페이지</u> <u>등에</u> -----. ----- ----- <u>공고하지 않을</u> -----.
제9조(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생략)	제9조(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u>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u>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현 행	개 정 안
<p><u>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u>경우</u> : 전액</li> <li>3. (생략)</li> <li>4. 사용개시 예정일 <u>전일까지</u>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li> <li>5. (생략)</li> </ol> <p>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u>신청일로 부터</u>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 등에 반환한다.</p>	<p><u>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 <u>경우</u>: ---</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 <u>전날</u>----- ----- --</li> <li>5. (현행과 같음)</li> </ol> <p>③ ----- ----- ----- <u>신청일로부터</u> -----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98 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독서진흥)”을 “(독서문화 여건 조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 2. 독서교실 및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학술행사, 강연, 독후감 대회,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탐방 및 견학

등

- 4.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
-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설문·조사·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 7.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운영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 이외로 발생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위촉 등) ① 시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개최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u>규정함으로써</u>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독서진흥) ① (생략)</p> <p>② 시장은 독서 관련 행사를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⑤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운영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1조(목적) ----- ----- ----- <u>규정함으로써,</u> ----- ----- ----- ----- ----- -----.</p> <p>제4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5조(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p>

현 행	개 정 안
	<p>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li> <li>2. 독서교실 및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3. 학술행사, 강연, 독후감 대회,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탐방 및 견학 등</li> <li>4.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li> <li>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li> <li>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설문·조사·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li> <li>7.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li> </ol> <p>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운영 공공</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를 <u>개최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④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 이외로 발생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u></p> <p>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 ----- ----- ----- ----- ----- <u>개</u> <u>최할 수 있다.</u></p> <p>제7조(표창) <u>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p> <p>제8조(강사 위촉 등) ① <u>시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u></p>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u> · <u>제7조</u> (생 략)</p>	<p><u>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u> <u>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u> <u>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u> <u>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9조</u> · <u>제10조</u> (현행 <u>제6조</u> 및 <u>제</u> <u>7조와 같음</u>)</p>

##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독서문화여건조성) ~ 제8조(강사 위촉 등)

###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책값 돌려주기 사업 시행
- 독서의 달, 북스타트, 문화가 있는 날, 독서문화 진흥 행사 진행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52,000천원
  - 책값 돌려주기 : 30,000천원
  - 독서의 달 행사 추진 : 6,000천원
  - 북스타트 사업 추진 : 6,000천원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 : 4,000천원
  - 독서문화 진흥 행사 추진 : 6,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비	260,000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자체재원(전액 시비)

###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799 호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책이음 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상호대차”란 해당 도서관에 대출하려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의 소재지는 남원시 광한북로 54(하정동)로 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의 제공·열람·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전시회·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지역의 향토 자료 수집·관리
9.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

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원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4. 남원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자료대출) ①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이관·폐기·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4.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의 이주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

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활동 전개) ①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 발전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시민단체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8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5. 그 밖의 독서운동계획 수립 등 도서관 후원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립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제15조 관련)

1. 사용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성별 ( 남, 여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사용 신청일 :

2. 사용 시설 :

3. 목적 및 사유 :

4. 사용 인원 :

5.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00 호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1.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이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

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장난감 대여실”이란 장난감을 회원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책이음 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상호대차”란 해당 도서관에 대출하려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의 소재지는 남원시 역재3길 12(도통동)로 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의 제공·열람·대출
3.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4. 어린이 및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및 교육
6. 지역의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회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대출 회원증

을 발급할 수 있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원시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4. 남원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 자료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
2. 장난감 대여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12:00 ~13:00 휴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거나 현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 또는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이관·폐기·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4.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의 이주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자료대출) ①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문화활동 전개)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창달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장난감 대여실 이용) ① 장난감 대여실의 회원가입 대상자는 만 6세 이하(취학 전 아동)의 영·유아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남원 시민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로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장난감 대여실 이용료 및 세부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은 조례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사항이나 이용 상 주의사항들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8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자원봉사활동신청서 (제14조 관련)

접수번호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 .
학교명	(학교명)	(전공학과)	
연락처			
주소			
봉사시간	년 월 일	00시 00분 ~ 00시 00분	
<p>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성명 :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p><b>남원시장 귀하</b></p>			

----- 절 취 선 -----

##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제14조 관련)

접수번호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 .
학교명	(학교명)	(전공학과)	
연락처			
봉사시간	년 월 일	00시 00분 ~ 00시 00분	
활동내용			
<p>위와 같이 봉사활동 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담당자 성명 :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제15조관련)

1. 사용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성별 ( 남, 여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사용 신청일 :

2. 사 용 시 설 :

3. 목적 및 사유 :

4. 사용 인원 :

5.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이용 세부기준 (제16조 관련)

 장난감 대여실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이용 대상	이용 시간
시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	1. 자료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 2. 장난감 대여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12:00~13:00 휴실)

 장난감 대여실 이용

회원 구분	대여수량	대여기간
일반회원	매회 2점(대형 1점)	7일 (1회 7일 연장 가능)

 회원의 연회비

구분	연회비	비고
일반회원	10,000원	

## ○ 연회비 면제 대상 (증빙자료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자녀를 둔 가정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 연회비 환불 기준

구분	환불 규정
가입 후 2개월 이내 (이사, 사망 등)	10%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4개월 이내	30%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불 불가

## □ 장난감 이용 시 유의사항

1.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3.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4. 장난감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 시 지연한 날짜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5. 운영자는 조례 등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 책임 및 변상 기준

1. 대여 중 회원이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동일 품목으로 교체하거나, 단종 되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대여 중 대여물품 전체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한 경우: 회원은 대여물품 구입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대여자료	구입 시기	변상 금액
장난감	구입 6개월 미만	구매가격의 100% 변상
	구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구매가격의 8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의 6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의 40% 변상
	구입 3년 이상	구매가격의 10% 변상

3.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01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 반환 결정을 할 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

- 1.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2.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수영장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 축구장	야외축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 족구장	야외족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롤러경기장	트랙, 로드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인공암벽장	실외암벽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충정로 341
다목적 롤러하키장	실내구장(막구조)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신준섭 복싱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만인로 41-51
육면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만인로 41-51
관덕정	국궁장	남원시 소리길 122-23
황산정	국궁장	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수영장, 헬스장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28-2

[별표 2]

##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종합 운동장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00	80,000	1. 1회 기준 : 3시간 - 춘향골 다목적구장, 춘향골 테니스장, 인공암벽장, 풋살장, 롤러경기장 별도 ※ 춘향골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가산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3.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 대여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 인공암벽장은 별도운영 - 12월~3월 ·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5.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육상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000	25,000	30,000		
춘향골 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춘향골 다목적구장		1면당 2시간 (조명료 포함)	20,000	25,000	체육경기 외 대여 불가			
춘향골 테니스장		1면당 2시간	6,000	8,000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 (1일 기준)	50,000	70,000				
		1회2시간	2,000	2,500				
남원 문화 체육 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대여 불가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30,000	40,000			40,000	50,000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300,000					
	풋살장	1회 2시간	어린이 무료	청소년 무료			일반 10,000	
롤러 경기장	구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			
	트랙, 로드	월정회원 (주간)	10,000	15,000	20,000			
		월정회원 (야간)	15,000	20,000	25,000			
	1회 3시간	평일주간 40,000		공휴일 및 평일야간 50,000				
다목적 롤러하키장	1회 3시간	평일주간 40,000		공휴일 및 평일야간 50,000				

(단위: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남원 실내수영장 (지리산권실내수영장)	구분	일반	중고생	초등/유아	1. 1일 2시간 사용 기준 2.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3. 월정기권 가입여성 10%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4.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1인 월	60,000	40,000	20,000		
	1인 1회 (2시간)	3,000	2,000	1,000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1인 월	40,000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1. 1일 2시간 사용 기준 2.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1인 1회	2,000				
	월 1코트 (대관)	100,000				
남원실내탁구장 (춘향골체육공원 내)	1인 월	30,000				
	1인 1회	2,000				
	월 1테이블 대관	50,000				
헬스장 (남원실내수영장/ 지리산권실내수영장 내)	1인 월	30,000				
	1인 1회	2,000				
춘향골 축구장	1회 3시간	30,000	40,000	1. 1회 기준 : 3시간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5.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춘향골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별표 3]

##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비 고
춘향골 체육관	조명	1회	실내조명 80,000 무대조명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전기	1회	20,000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1회3시간	120,000
	전기	1일1회	20,000
	음향	1일1회	20,000
춘향골다목적구장	전기	1일1회	20,000
	음향	1일1회	20,000
춘향골 테니스장	조명	1회	4,000
인공압벽장	전기	1일1회	20,000
남원 문화체육센터	실내조명	1회	30,000
	조명타워	축구 1회 족구 1회	40,000 15,000
	냉·난방	1회	20,000
	음향	1회	20,000
	전기	1회	20,000
	롤러 경기장	조명타워	트랙 1회 로드 1회
전기		1회	20,000
다목적 롤러 하키장		실내조명	1회
	전기	1회	20,000
춘향골 축구장	조명타워	1회	40,000
춘향골 족구장	조명타워	1회	15,000
남원 실내탁구장	전기	1회	20,000
	음향	1회	20,000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전기	1회	20,000
남원 실내수영장	전기	1회	20,000
	조명	1회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탁자	1개	1,000	
의자	1개	500	
샤워장	1인1회	50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p>	<p>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 반환 결정을 할 때 각 호 의 사항을 지켜 반환하여야 한 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 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 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u> 1. <u>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u> 2. <u>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02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 각 호의 세율”로 한다.

제8조 중 “사업소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으로, “용도”를 “지번, 용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p> <p>1. <u>개인의 세율</u></p> <p>가. <u>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u>의 세율: 10,000원</p> <p>나. <u>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u>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2. <u>법인의 세율</u>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6조(세율) ----- ----- --.</p> <p>1. &lt;삭 제&gt;</p> <p>2. &lt;삭 제&gt;</p>
<p>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7조(세율) ----- ----- 제1항 각 호의 세율-----.</p>
<p>제8조(신고의무) <u>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u>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 -----지 번, 용도-----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03 호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p>	<p>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p>

현 행	개 정 안
<p><u>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u></p>	<p><u>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04 호

###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을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으로,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제3조를 삭제 한다.

제4조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면제하고”로,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 부터”를 “사업개시일부터”로 한다.

제7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로, “경우에는”을 “건축물에 대해서는”으로,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30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6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감면여부”를 “감면 여부”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05 호

###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46조제1항제5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세원(稅源)을”을 “세원(稅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6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제8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제7조 관련)

수신 : 남원시장

참조 : 재정과장

발신 :

(금액: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계					
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채 납 액 징 수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수신 : 남원시장

참조 : 재정과장

(금액: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계					
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채납액 징수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붙임 : 지난년도 채납액 징수내역 1부.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

신청인 : (인)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u>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146조제1항제5호</u>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u>세원</u>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p> <p>② 「<u>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u>」 <u>제62조의2제1항</u>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li> </ol>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82조</u>----- ----- -----.</p> <p>제2조(지급대상) ① ----- ----- <u>제146조제1항제3호</u>----- ----- <u>세원(稅源)</u>을 ----- ----- ----- ----- -----.</p> <p>② 「<u>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u>」 <u>제54조제1항</u>-----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li> </ol>



현 행	개 정 안
<p>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p> <p>제9조(환수)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 -----.</p> <p>제9조(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06 호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07 호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며”를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 중 “산출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전용으로”를 “전용(專用)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출하여야”를 “정하여야”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산출할”을 “정할”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2호”를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를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산출한다”를 “계산하여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만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귀책사유”를 “책임이 있는 사유”로, “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초과 : 연 4회”를 “초과: 연 6회”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위치하거나”를 “있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치한”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일단”을 “일단(一團)”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위치한”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사도에”를 “사설도로에”로, “사도를”을 “사설도로에”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순으로”를 “순서로”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검비한”을 “두루 갖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2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다”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④ 영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 영 제80조를 준용한다.

제63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형상”을 “모양·상태”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하고, 제68조를 제67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                      트 이상된 건물 및 그 밖의 시                      설물”의 확정사항</p> <p>② (생 략)                      &lt;신 설&gt;</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p> <p>1. (현행과 같음)                      &lt;삭 제&gt;</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                      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                      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                      개하여야 한다.</p>
<p>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                      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법 제                      21조제1항에 따른다.&lt;단서 신                      설 2014.4.2.&gt; &lt;단서 삭제018.5.                      4&gt;</p>	<p>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                      1조제1항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19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p>	<p>제19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p>

현행	개정안
<p>① (생략)</p> <p>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u>아니</u> 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안</u> ----- -----.</p>
<p>1. 2. (생략)</p> <p>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략)</p> <p>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경우</u>에 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인정할 때에는</u> ----- ----- -----.</p>
<p>⑤·⑥ (생략)</p> <p>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u>해지</u>하고 재산을 환수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 ----- ----- ----- ----- <u>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u> ----- <u>할 수</u> 있다.</p>
<p>②·③ (생략)</p> <p>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p>



현 행	개 정 안
<p><u>출하여야</u>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p>	<p><u>하여야</u>----- . ----- ----- -----.</p>
<p>1. 2. (생략)</p> <p>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u>산출</u>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⑤ ----- ----- ----- ----- <u>정할</u> ----- ----- . ----- ----- ----- -----.</p>
<p>제32조(대부료·사용료의 감면)</p> <p>① (생략)</p> <p>② <u>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2호</u>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p> <p>③ <u>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p>	<p>제32조(대부료·사용료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u>----- ----- ----- ----- ----- ----- -----.</p> <p>③ <u>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u>----- ----- -----</p>

현 행	개 정 안
<p>감면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생략)</p> <p>② 전세금은 시금고에 1년 정기 예금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대부료 등에 <u>상당한</u> 금액이 되도록 <u>역산한</u> 금액 이상으로 <u>산출한다</u>.</p> <p>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 ·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u>만료되거나</u> 중도에 취소 · 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및 대부자의 요청 또는 <u>귀책사유</u>로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u>감한</u> 금액을 반환한다.</p> <p>④ (생략)</p> <p>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p>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상응하는</u> -----</p> <p>----- <u>계산</u> 하여 정한다.</p> <p>③ -----</p> <p>----- <u>끝나거나</u> -----</p> <p>----- <u>책임이 있는 사유</u> -----</p> <p>----- <u>뺀</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현 행	개 정 안
<p>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p> <p>1. 100만원 <u>초과</u> : 연 4회의 범 위내에서 분할납부</p> <p>③ (생 략)</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 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삭 제</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 에 <u>위치하거나</u> 동일인의 사유 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 한 경우</p> <p>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u>위치한</u> 토지를 생산시 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는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 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와 접한 경우</p> <p>4. (생 략)</p> <p>5. 시와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p>	<p>-----.</p> <p>1. ----- <u>초과: 연 6회</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 -----.</p> <p>2. ----- ----- ----- ----- ----- ----- ----- ----- -----</p> <p>3. ----- ----- <u>있는</u> ----- ----- ----- ----- -----</p> <p>4. (현행과 같음)</p> <p>5. -----</p>

현 행	개 정 안
<p>소유한 <u>일단</u>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lt;단서 삭제 2014.4.2.&gt;</p> <p>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u>위치한</u>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p> <p>7. (생략)</p> <p>8.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u>사도에</u>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u>사도를</u>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9. (생략)</p> <p>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는 재해, 붕괴위험,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 <u>일단(一團)</u> ----</p> <p style="text-align: center;">-----</p> <p>6. -----</p> <p style="text-align: center;">----- <u>있는</u>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7. (현행과 같음)</p> <p>8.-----</p> <p style="text-align: center;">-- <u>사설도로에</u> -----</p> <p style="text-align: center;">-- <u>사설도로에</u> -----</p> <p style="text-align: center;">-----</p> <p>9. (현행과 같음)</p> <p>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style="text-align: center;">-----</p>

현 행	개 정 안
<p>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 적당의 <u>순으로</u> 한다.</p>	<p>----- ----- <u>순서로</u>-----.</p>
<p>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의 지방청사·종합회관 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 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 감 등 장래 수요를 <u>감안한</u> 적 정 규모로 설계</p> <p>2. ~ 5. (생략)</p> <p>6. 경제성과 안정성을 <u>겸비한</u> 구조로 설계</p> <p>7.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영 제95조에 규정되지 <u>아니한</u>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 준 등은 영 제95조의 기준을 준 용한다.</p> <p>③ (생략)</p>	<p>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 ----- ----- -----.</p> <p>1. ----- ----- <u>고려한</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6. ----- <u>두루 갖</u> <u>춘</u>-----</p> <p>7. (현행과 같음)</p> <p>② ----- ----- <u>않은</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2조(사용허가) 관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1 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u>아니한다</u>.</p>	<p>제52조(사용허가) ----- -----. ----- ----- ----- <u>않다</u>.</p>
<p>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생</p>	<p>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현행</p>

현 행	개 정 안
<p>략)</p> <p>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u>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u></p> <p><u>&lt;신 설&gt;</u></p>	<p>과 같음)</p> <p>② ----- ----- <u>규칙에서</u> ----- ----- ----- -----</p> <p>③ <u>시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u></li> <li>2. <u>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u></li> <li>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li> <li>4. <u>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u></li> </ol> <p>④ <u>영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 영 제80조를 준용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략)</p> <p>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규칙에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략)</p> <p>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 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u>아니한다</u>.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③ ----- ----- ----- <u>않는다.</u> ----- ----- -----</p>

현 행	개 정 안
<p>지급할 수 있다.</p> <p>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안</u>된다.</p> <p>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u>형상</u>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p> <p>제6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u>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u></p> <p>제68조 (생 략)</p>	<p>-----.</p> <p>④ ----- ----- ----- <u>안</u>된다.</p> <p>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u>모양·상태</u> ----- -----.</p> <p>-----.</p> <p>&lt;삭 제&gt;</p> <p>제67조 (현행 제68조와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08 호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조”를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용자대상업체)”를 “(자금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대상업체는”을 “자금 지원대상은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로,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

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의 용자계획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1조제2항 중 “제6조제6호의”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으로,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 및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09 호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10 호

###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축산인”이란 남원시 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축사”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연접하여 5가구(공동주택은 그 가구수로 본다)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인의 책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업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남원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 육성·유통시설 확충·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경쟁력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분뇨) 관련 시설·장비·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의 개량 및 증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부숙도 검사 등에 관한 사항
4. 조사료, 부존사료자원 생산·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도간 축산인 한마음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동물복지 및 보호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업 체험 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13. 축산농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축사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제한) ① 남원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업의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남원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자문하는 남원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원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 각 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축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3. 축산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4.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 대표
5.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행정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11 호

###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7조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를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로 한다.

- ②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2조 중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협동조합기본법」”

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하고, “국토교통부가 설립·인가한 남원시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다.

### 3.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략)</p> <p>② <u>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③ (생략)</p> <p>④ <u>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장 각 1명을 둘 수 있다</u></p> <p>⑤ (생략)</p> <p>⑥ <u>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 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p> <p>⑦ (생략)</p> <p>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u>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남원시 지</u></p>	<p>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u> -----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 ----- ----- ----- <u>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u> -----</p>

현 행	개 정 안
<p>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1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p> <p>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p> <p>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설립·인가한 남원시마을관리협동조합</p> <p>④ (생략)</p> <p>&lt;신설&gt;</p>	<p>-----</p> <p>-----.</p> <p>제1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p> <p>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p> <p>③ 시장은 관리 및 운영 상 필</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li> <li>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li> </ol>	<p><u>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④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 -----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li> <li>② ----- ----- -----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li> </ol>

현 행	개 정 안
<p>「남원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p>	<p>-----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12 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응급의료기관 등에”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①</p> <p style="padding-left: 20px;">· ② (생략)</p> <p>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u>응급의료기관 등에</u>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16조(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①</p> <p style="padding-left: 20px;">·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u>----.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12 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응급의료기관 등에”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①            · ② (생략)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16조(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u>---.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13 호

###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남원지역담당관”을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한다.

6.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

10.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제4조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제4조제2호에 아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취약지역 대비책

제5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  
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생략)</p> <p>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원시의회 의장</li> <li>2.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li> <li>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li> <li>4. 남원경찰서장</li> <li>5. 육군 제7733부대 3대대장</li> <li>6. <u>남원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u></li>   <li>7. 국가정보원 <u>남원지역담당관</u></li> <li>8. 남원소방서장</li> <li>9. 남원시 재향군인회장</li> <li>10. <u>전주보훈지청장</u></li> <li>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③ (생략)</p> <p>제4조(협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2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현행과 같음)</li>   <li>6. <u>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 (지원대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u></li> <li>7. ----- <u>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u></li> <li>8. · 9. (현행과 같음)</li> <li>10. <u>전북동부보훈지청장</u></li> <li>11. (현행과 같음)</li> </ol>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협회의 심의사항) ----- ----- --.</p>

현 행	개 정 안
<p>1. (생 략)</p> <p>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p> <p>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p> <p>나. <u>향토예비군</u>,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p> <p>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p> <p>라.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p> <p>마.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p> <p>바.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 유선 지원대책(중요시설, 목진지 등)</p> <p>사.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 (체육관, 학교 등)</p> <p><u>&lt;신 설&gt;</u></p> <p>3. ~ 5. (생 략)</p> <p>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예비군</u>-----</p> <p>-----</p> <p>-----</p> <p>-----</p> <p>다. ~ 사. (현행과 같음)</p> <p>아. <u>취약지역 대비책</u></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p>

현 행	개 정 안
<p>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p> <p>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남원시 방위 협의회</p> <p>2. (생략)</p>	<p>----- ----- ----- -----.</p> <p>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 -----</p> <p>2.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14 호

###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u>: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li> <li>3. <u>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u>: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li> </ol> <p>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남원시장은 제2조에 따른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남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2조(적용범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u>: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개인택시 운송사업자</u></li> <li>2. <u>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u></li> </ol>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조례 제 1815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 ”으로 하고, “차량”을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별표 5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신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임신부가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별표 3,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1999.7.28, 2004.1.28., 2005.12.29., 2015.6.30. 2016. 9.23, 2016.12. 9., 2018. 5. 4.>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 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 옥외수영장: 정원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적용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정함.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

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적용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정함.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별표 5] &lt;신 설&gt;

**주차장 요금 경감 보훈대상자** (제3조제4항제2호 관련)

다음 각 호의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 ③ (생략)</p> <p>④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경감한다.</p> <p>1. (생략)</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p> <p>3. 정부시책 및 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p> <p>가.·나. (생략)</p> <p>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p> <p>라. (생략)</p> <p>4. ~ 7. (생략)</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별표 5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u></p> <p>3.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 ----- <u>차량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u></p> <p>라. (현행과 같음)</p> <p>4. ~ 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8. 「 <u>모자보건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한 산모수첩 등 임신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임신부가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

-규칙3건-

□ 규칙 : 3건

공포 번호	규칙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710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의회 사무국
711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 청가서 제출 관련 단서를 신설함(안 제7조 제1항)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를 보완함(안 제11조)	의회 사무국
712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가. ‘주민세(재산분)’를 ‘주민세(사업소분)’으로 용어 변경(안 제6조)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안 제7조)	재정과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규칙 제 710 호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 -----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규칙 제 711 호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4항 중 “사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선거의 피선거권”을 “선거의 피선거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고”를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없는”을 “없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행, 휴가, 경조사”를 “신병, 출장, 회의결석, 기타의 사유”로, “없는”을 “없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의 직무를”을 “의장이 직무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제60조의2 제2항”을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제9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정상근  
무일까지로 한다.

⑥ ~ ⑧ (생략)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다음 각호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

1. (생략)

2. 여행, 휴가, 경조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생략)

② (생략)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  
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  
부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63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② (생략)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0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생  
략)

② (생략)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부회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 각 호와 같은 부  
득이한 사유--- 없을 -----  
-----.

1. (현행과 같음)

2. 신병, 출장, 회의결석, 기타의  
사유--- 없을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의장이 직무를 -----  
-----.

제63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62조제2항 -----  
-----.

제93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6일

남원시 규칙 제 712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세(재산분)”를 “주민세(사업소분)”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u>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 ----- ----- ----- ----- <u>주민세(사업소분)</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u>법 제83조제4항</u>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p>	<p>제7조(보통징수) ----- ----- ----- ----- <u>법 제83조제6항</u>----- -----.</p>